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체계 및 지원 규정 마련〉
■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33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6
1. 총괄 검토	6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입법 필요성	6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12
2. 조문별 검토	15
가. 제1장(총칙)	15
나. 제2장(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19
다. 제3장(주얼리 소매업자의 등록 등)	23
라. 제4장(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	27
마. 제5·6장(보칙·벌칙)	34
바. 부칙	37
※ 참고자료	39
1. 주얼리 소매업 등록제 해외 사례	3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광상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19.
3. 회 부 일 : 2024. 8.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얼리는 특정 부유층만이 향유하는 사치성 소비재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결혼문화, 패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음. 주얼리산업은 유럽·중국 등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했으며 수출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주얼리 세공기술을 인정받고 있지만 수많은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연간 약 1조 8,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고급 주얼리시장의 50% 이상을 잠식하는 등 국내 주얼리산업은 해외 주요국 대비 국제경쟁력을 잃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얼리가 1990년까지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

정되는 등 주얼리시장이 기형적으로 형성·왜곡되어 왔고, 주얼리 제품에 높은 세율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어 주얼리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었음. 또한, 주얼리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탈세 및 자금세탁이 만연하고, 모조품 등의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등 시장왜곡 및 허술한 유통관리체계가 갈수록 심화되며 주얼리 제조산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무엇보다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들이 불량 금 또는 합성 보석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극심하고 이는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져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해외 명품을 주로 구매하고 있어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의 매출이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등 막대한 국부의 유출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의 권고사항(The FATF Recommendations)에 따라 특정비금융사업(카지노업종,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인 주얼리소매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하지만, 그동안 잘못된 제도 유지에 기인한 산업의 음성화로 인해 아직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얼리를 제3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한류 상품(K-JEWELRY)으로 도약시키고, 주얼리시장에서 음성적 거래 및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얼리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체계, 주얼리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The FATF Recommendations)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에 주얼리소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주얼리 거래를 투명화하려는 것임.

더불어 주얼리유통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얼리소매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속적인 고용창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주얼리산업기반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석·귀금

속 및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

라. 주얼리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결격사유, 주얼리소매사업자의 지위 승계,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및 등록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주얼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촉진, 주얼리의 품질 검증 및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아. 정부는 주얼리산업 관련 국제전시회에서 전시·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19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주얼리를 지정하여 브랜드화 지원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주얼리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기술의 전수 및 발전을 위하여 기술 수준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입법 필요성

주얼리는 일반적으로 보석 및 귀금속을 원재료로 하여 만드는 장식품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보석과 귀금속은 재화 자체가 가진 희소성 · 불변성 · 가치축적성 · 환금성으로 인하여 다른 소비재와 달리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인식되어 일부 부유층의 소비품목으로 여겨졌음.

그러나 국민소득의 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심미성 · 상징성 · 자기만족과 같은 주관적 욕구 충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구매 욕구 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정 부유층만의 향유품에서 벗어나 결혼 문화에서의 예물로 활용되거나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되는 등 수요 양상이 변하고 있음.

산업적 측면에서도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은 원재료의 가공 및 세공 기술에 따라 제품의 가치가 가변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데, 수요층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고급화된 맞춤 생산이 가능하여 고도의 가공 기술 뿐만 아니라 브랜드, 디자인 등과 연계할 경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음.

세계 주얼리 시장규모는 코로나 이후 세계 명품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2024년 3,960억 달러 규모로 예측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4.5% 성장하고 있고, 세계 주얼리 교역액은 2022년 1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최근 10년간 매년 3.9% 성장하는 교역신장세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해당하며, 중국, 미국, 인도를 중심으로 세계 주얼리 시장의 70% 이상이 형성되어 있고, 고급 주얼리 시장에서는 중국(홍콩), 프랑스 업체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¹⁾.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세계 25위 수출국으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0.3% 가량이며, 2023년 기준으로 수출 4.3억 달러, 수입 11.1억 달러로 6.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점차 상승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만, 태국 등 동아시아로 다변화되는 반면, 수입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

우리나라의 보석 및 귀금속 산업은 대량화·기계화하기 어려운 제품의 특성상 소규모 수공업 형태의 영세업체 위주로 생태계가 형성되어 브랜드 및 마케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귀금속 제조업체와 도·소매 판매에 있어서도 세금 회피 등을 이유로 현금물·무자료 거래 등이 성행하면서 유통구조가 낙후되어 있다는 지

1) 한국무역협회(KITA), 「국내 주얼리 수출산업 현황 및 시사점」(2024. 4. 23.) 중 일부 요약

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유통구조의 낙후는 기존 「고물영업법」에 의해 귀금속상이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1993년 동 법이 폐지되면서 자유업종으로 전환되고 이후 허술한 유통관리에 의해 음성시장화 됨에 기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으며²⁾,

정부는 조세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석 및 귀금속 산업의 양성화등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3.6)에 따른 귀금속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개별소비세법」 개정('18.12)에 따른 나석의 개별소비세 면제, 「관세법」 개정('19.12)에 따른 25종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을 실시하였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보석 및 귀금속의 음성적 거래가 지속되고 있고, 불량·합성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산업 전반을 양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얼리 시장의 고급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제조·유통·

2) 국회의원 김원아·오세희·김동아 의원실,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정책자료 (2024. 8. 21.), p. 65

링크(국회도서관 국회의원 정책자료):

https://ampos.nanet.go.kr:7443/materialSeminarDetail.do?control_no=PAMP10000000076035

판매되는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투명화를 전제로 가공기술, 디자인,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하며³⁾,

현재 보석 및 귀금속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는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발전법」,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공산품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각종 산업에 관련된 기술혁신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이 있으나,

이들 법률은 다양한 산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특정 분야의 제조·유통 및 판매를 특화하여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의 특성 및 발전 방향 등을 반영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가 2009년 10월 정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⁴⁾)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무 부과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특정 비금융사업자(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귀금속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귀금속상

3)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귀금속·보석산업 발전 방안」(’07.7)을 수립하여 산업 인프라 구축, 우수 공예품의 개발·마케팅 지원, 국내 제조 귀금속 제품의 품질표시, 금융통관리기구 설립 등의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음.

4)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불법자금 모니터링 및 국제 간 협력체제 지원을 위해 1989년 OECD 산하기구로 설립된 국제기구임.

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아 국제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부과 및 국가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동법 제정을 통해 주
얼리 및 원자재의 거래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안은 주얼리산업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창업·제
조·품질검증·기술개발, 우수 주얼리 지정 등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얼리소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산업부장관
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투명화·양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우리나라는 직업기술 최고 대회인 국제기능올림픽 귀금속공예 부문
에서 26회 연속 입상을 할 만큼 높은 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고부가 주얼리시장 확대 및 K-패션의 확산으로 홍보기회가 확대하는
등 향후 발전 여지가 높은 측면이 있는 반면,

일부 보석 및 귀금속의 경우 여전히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⁶⁾에 포함
되는 등 사치재로 인식되고 있어 정책의 적용범위가 한정적인 측면이
있고, 20년 이상 수출업력 기업이 13개에 불과하고 영세 업체의 비중이

5) 제정안에서는 ‘주얼리를 제조(가공 포함)하거나,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를 판매·수입·수출·전시·소비 또는 그 밖에 주얼리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6)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 진주, 별갑(鱉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귀금속제품 등에 대해서는 기준가격(5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 20%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함.('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

높아 소매점 등록제 등을 실시하는 경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얼리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 제정의 기본취지에 공감하나, ①산업발전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기존 법령으로도 주얼리산업에 대한 지원⁷⁾이 가능하고, ②주얼리산업의 내수시장 규모는 전체의 0.3% 수준인 4.2조원('21년 통계)⁸⁾⁹⁾으로 주얼리산업만을 위한 단독 법률 제정보다는 포괄적으로 생활소비재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③주얼리 소매업 등록제의 경우, 신규 창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산업성장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있으므로 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업계내 의견수렴 및 충분한 사전연구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이는 결국 법률의 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므로, 법률안의 심사 과정에서 보석 및 귀금속 관련 산업에 대한 입법적 지원의 필요성 및 정책의 방향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7)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내 '생활산업경쟁력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익산 지역에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04년부터 '18년까지 지원(총사업비 386억원)한 바 있음.
8)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연구원, 「2023 생활소비재산업 실태조사」(2023. 12.)
9) 민간 주얼리 산업 연구소인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에 의하면 국내 주얼리시정 전체 규모는 7조 7,315억원으로 추정됨. 출처 :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w-jewel.or.kr)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제정안은 총 5장, 33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은 총칙으로서 법률의 목적, 정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두고 있고, 제2장은 추진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제3장은 주얼리 소매업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지위·처분 승계 및 등록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제4장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전문인력 양성, 창업·기술개발 지원, 기반시설 확충, 유통 활성화 및 투자촉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우수주얼리 지정,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제5장은 보칙으로서 보고·조사,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과태료 등을 규정하였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는 한편, 기존에 주얼리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는 법률 시행 후 1년 내에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제정안 목차

장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제5조(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
제3장 주얼리 소매업자의 등록 등	제7조(주얼리소매업자의 등록) 제8조(주얼리소매업자의 지위 승계) 제9조(처분효과의 승계) 제10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4장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	제12조(실태조사) 제13조(주얼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14조(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창업 및 제조 지원) 제16조(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 지원) 제17조(주얼리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제18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20조(우수주얼리의 지정 등) 제21조(우수주얼리의 지정취소) 제22조(주얼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제23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주얼리산업의 융합 및 연계) 제2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27조(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지원)
제5장 보칙	제28조(보고와 조사 등)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양벌규정) 제33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주얼리소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정의	· 주얼리, 주얼리 원재료, 주얼리산업, 주얼리소매업 등의 정의조항 규정
책무	· 국가와 지자체의 주얼리산업 관리·육성 정책 추진 및 투명화 책무 규정
계획 수립	· 산업부장관이 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5년), 시행계획(1년) 수립
위원회 설치	·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장(호선), 부위원장 등 위원 10~15인(산업부장관 임명 또는 위촉) -심의사항: 기본·시행계획 수립·시행, 정책 평가 및 자문 등
주얼리 소매업등록	· 주얼리소매업 등록제 도입 - 사업소별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 사업개시·휴업·폐업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 - 지위승계, 처분효과의 승계, 등록취소 등
기반조성 및 산업지원	·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전문인력의 양성 · 창업 및 제조지원, 품질검증·기술개발 지원 · 기반시설 확충 · 유통 활성화, 투자 촉진,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 국제전시회 판매품에 대한 세제지원 · 우수주얼리 및 주얼리기업 명가 지정 · 주얼리산업의 융합 및 연계 · 우수 사례 발굴 시상,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지원 등
전담기관 지정	· 주얼리산업 진흥업무 전담기관 지정 -사업분야: 조사·연구, 유통·전시·홍보, 품질검증, 국제교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보칙	· 보고와 조사 ·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 벌칙 -미등록·부정등록 주얼리소매업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주요사항변경미등록자(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 양벌규정, 과태료 등

2. 조문별 검토

가. 제1장(총칙)

제정안은 법률 제명을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제1장에서 법률의 목적,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두었음.

제 정 안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얼리”란 주얼리 원재료를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만들어진 반지·브로치·목걸이·귀걸이·팔찌 등과 같은 장식물을 말한다.
2. “주얼리 원재료”란 주얼리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다이아몬드, 진주 등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금·은 등 귀금속과 희귀 광물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얼리산업”이란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를 제조하거나,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를 판매·수입·수출·전시 또는 그 밖에 주얼리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영역을 말한다.
4. “주얼리소매업”이란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주얼리소매업자”란 주얼리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제조기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주얼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고용 창출, 중소기업 육성,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해외 경쟁력 확보 등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FATF)의 권고사항(The FATF Recommendations)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주얼리 소매업의 등록·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먼저 목적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한 계획수립 등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다음으로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주얼리”의 정의를 “주얼리 원재료를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만들어진 반지·브로치·목걸이·귀걸이·팔찌 등과 같은 장식품”로 규정하고, “주얼리 원재료”란 “주얼리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다이아몬드, 진주 등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금·은 등 귀금속과 희귀 광물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주얼리산업”은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를 제조

하거나,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를 판매·수입·수출·전시 또는 그 밖에 주얼리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영역” 등으로 규정하였음.

“주얼리 원재료”의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석·나석 등을 가공하여 주얼리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주얼리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이므로, 정의 규정 중 “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는 내용은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책무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주얼리산업의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주얼리 제조기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며, 주얼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얼리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고용 창출, 중소기업 육성,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해외 경쟁력 확보 등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The FATF Recommendations)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음.

FATF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에 따르면 귀금속상·보석상이 고객과 기준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확인, 기록보존 및 의심거래의 보고 의무 등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제정안은 이러한 권고사항의 이행을 통해 주얼리 거래의 투명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임.

끝으로, 제정안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주얼리 소매업의 등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일반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취지가 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규정한 「산업발전법」 등과 별도로 주얼리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주얼리 소매업의 등록·관리에 관하여 제정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됨.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생활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산업의 일부인 주얼리 산업만을 위해 법률안 제정하기보다 생활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제2장(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제정안 제2장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5년 주기의 ‘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매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 및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장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제5조(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 2.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창업 및 제조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얼리의 제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주얼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주얼리의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8.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주얼리 국제전시회 개최 및 면세제도 운영, 주얼리전문 면세점 허가 등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제20조에 따른 우수주얼리에 대한 특별지원 사항 11. 그 밖에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 ①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얼리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보석·귀금속 및 주얼리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설정하였는데, 주얼리산업은 ‘생활산업’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업·무역·공업·통상 등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기본계획의 수립 등 관련 정책 추진을 담당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¹⁰⁾.

10) 「정부조직법」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

또한, 제정안은 주얼리 관련 정책의 평가·자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보석·귀금속 및 주얼리산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등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경우에 분야별 전문가나 대표자를 통해 해당 분야의 현안을 청취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사항을 정책과정에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며, 효과성 높은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임.

다만, 제정안 제6조제3항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는 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이를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위원장의 선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생활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산업의 일부인 주얼리산업만을 위해 기본

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하 생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중복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¹¹⁾ 국정과제에 따라 정부위원회의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하는 대신 산업부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¹²⁾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최고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두며, 그 소속하에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한다. (이하 생략)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2. 성장동력 분과위원회
3. 무역투자 분과위원회 (후략)

다. 제3장(주얼리 소매업자의 등록 등)

제정안은 주얼리소매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업소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소매업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3장 주얼리 소매업자의 등록 등 제7조(주얼리소매업자의 등록) ① 주얼리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주얼리소매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얼리소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주얼리소매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주얼리소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주얼리소매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주얼리소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얼리소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처분효과의 승계) 제8조에 따라 주얼리소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

의 주얼리소매업자에 대한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주얼리소매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소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등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주얼리 판매업은 사업자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영위할 수 있는 자유업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하여 판매자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거래 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탈세·자금세탁·모조품 유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통관리 체계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단계인 소매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얼리, 금괴 및 보석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등록제를 도입하여 주얼리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을 설정할 경우, 해당 업종을 양성화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매출 등 과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판매 물품의 품질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판매업의 유통질서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주얼리소매업자의 등록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에 대한 대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제정안은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에 따르면 주얼리소매업자의 등록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반면, 지위승계,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등록취소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계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등록권자와 지위승계, 사업 개시 등의 신고, 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이 일치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얼리는 화장품, 농약과 같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품이 아니므로, 소매업에 대한 등록제가 자칫 과도한 행정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주얼리 제조기업 등에서는 등록제가 신규 창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산업 성장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과, 소매업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만으로 주얼리 시장 전반의 거래상 문제점이 해소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의견임.

해외의 경우 주얼리사업의 등록·인증제도 운영방식이 국가마다 상이한데¹³⁾,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국내 주얼리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록제 도입 여부, 도입 범위, 등록 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3) 【참고자료, 주얼리 소매업 등록제 해외 사례(산업연구원)】 참조

라. 제4장(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

제정안은 주얼리산업 관련 실태조사, 관련 통계의 작성,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 및 제조지원,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지원, 기반시설 확충, 유통구조 현대화 및 투자 촉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우수주얼리·주얼리기업 평가 제도 도입, 전담기관의 지정, 주얼리산업의 융합 및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지원 등 주얼리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항을 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4장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
제12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얼리산업 관련 해외 실태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주얼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 및 해외 주얼리산업 관련 자료를 분석·가공한 통계(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및 직업 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사업
2. 신규 주얼리산업 관련 인력의 유입 활성화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사업
3. 주얼리기술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기술 전수에 관한 사업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주얼리산업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대학,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창업 및 제조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주얼리의 제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를 제조하는 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조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의 품질을 검증하고 주얼리의 제조에 필요한 주얼리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원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주얼리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주얼리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주얼리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단체 또는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주얼리 관련 국제전시회 기간 중 전시장 내에서 전시 또는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 상품 및 브랜드 개발, 국제전시회 개최 및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우수주얼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주얼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주얼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우수주얼리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주얼리에 대한 브랜드화 지원, 전시지원, 투자알선, 해외진출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우수주얼리의 지정 기준·절차·표시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우수주얼리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주얼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

야 한다.

제22조(주얼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기술의 전수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 수준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주얼리기업 명가로 선정하여 해당 기업에 포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사업 전부를 친족에게 양도한 주얼리기업일 것
2.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양도 시 업종 및 고용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주얼리기업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주얼리기업 명가의 구체적인 요건, 선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주얼리기업 명가의 선정취소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우수주얼리”는 “주얼리기업 명가”로, “지정”은 “선정”으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 중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의 요건”으로 본다.

제23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얼리기업 명가가 아닌 자는 주얼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주얼리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유통·전시·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3. 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제조에 관한 기술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4.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5. 주얼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표준화
6.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주얼리소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관련 해외 동향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주얼리산업의 융합 및 연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통 세공기술과 현대 주얼리기술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주얼리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이 현대적 디자인, 전통문양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의 생활화·산업화 및 세계화 등을 통하여 주얼리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그 관련 단체 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에 따른 각종 지원 규정은 그동안 체계적인 산업기반이 미흡했던 주얼리의 제조·판매·수출 등을 국가가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주얼리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다각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서, 입법정책적으로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일부 지원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은 주얼리 관련 국제전시회 기간 중 전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

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안 제19조제2항),

기획재정부는 세제지원의 경우 외국반출이 전제되지 않은 면세 물품 등의 판매는 과세원칙,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 시 수용이 곤란하며, 개별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반영할 사항에 해당한다는 입장임¹⁴⁾.

둘째, 제정안은 우수 주얼리 지정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20·21조),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지정 제품은 품질이 좋지 않다는 소비자의 오해를 야기할 수 으므로, 법정 지정제도 보다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셋째, 제정안은 주얼리기술의 전수 및 발전을 위하여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안 제22조), 산업통상자원부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지원 제도¹⁵⁾를 통해 주얼리 업계의 우수인력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¹⁶⁾, 유사 제도 신설 시 업계

14)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이하 생략)

15)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혼란 및 중복 수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얼리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해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 사업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존 「산업발전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을 통해서도 주얼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필요성 및 타 업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6) '23년 1월 기준으로, 보석 및 금속공예 분야에서 대한민국 명장 4명 및 우수 숙련기술자 9명이 선정·지원받은 바 있음.

마. 제5·6장(보칙, 벌칙)

제정안 제5장은 보칙에 관한 장으로서 주얼리의 유통관리를 위한 보고와 조사, 권한의 위임·위탁을, 제6장은 벌칙에 관한 장으로서 벌칙, 공무원 의제, 과태료 등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장 보칙 제28조(보고와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얼리의 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얼리소매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얼리소매업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②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우수주얼리 지정을 받은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우수주얼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주얼리의 표시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얼리기업 명가로 선정 받은 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주얼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정안 제29조에서는 산업부장관이 주얼리의 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얼리소매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사업소에 대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주얼리소매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할 경우 그 등록 요건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의 경우 통계자료 작성 목적으로도 주얼리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⁷⁾, 조사대상인 ‘소매업자’는 소규모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자인만큼 이러한 조사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사의 목적·대상·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⁸⁾.

또한 제정안은 미등록자 등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는데(안 제30조), 주얼리소매업 등록제 도입 시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재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에서도 미등록자에 대한 벌칙 부과는 일반적인 것으로 보임.

17) 제14조(주얼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주얼리산업 관련 자료를 분석·가공한 통계(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및 주얼리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이와 관련하여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바. 부칙

제정안은 부칙 2개 조문을 두고 있는데, 법률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시행 당시 주얼리 등을 판매하던 자는 법률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경과조치가 규정되었음.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얼리소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 재료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주얼리소매업을 영위하려면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법률의 시행일은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며, 기관의 설립이나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임¹⁹⁾.

제정안의 경우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주얼리소매업의 등록 요건, 실태조사의 방법, 창업·제조·수출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 법령 정비 등에

19)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706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한편 제정안은 기존에 주얼리 등을 판매하던 자의 경우 법률 시행 이후에도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되,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였는데, 기존 판매업자들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0

1. 일본

- ☐ 보석, 귀금속, 악세사리 등 판매영업에 필요한 허가, 인가, 등록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없음
- 법무국(국세청)에 개·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확정신고를 받는 것으로 완료

2. 홍콩

- ☐ 업계 자체적으로 주얼리 평판 상호(Reputation Shop Mark) 인증제도 시행
- 홍콩 주얼리협회(Hong Kong Jewelers & Goldsmiths' Association)는 '17년 '주얼리 소매업 관련 법규'를 발표하고 주얼리 평판 상호 제도를 시행
- 인증은 1년간 유효, 매년 인증 갱신을 검토해야 하며 관련 지침 위반 시 인증 취소 및 해당 사실이 공개됨

3. 미국

- ☐ 주얼리 산업 분야에 대한 특정 등록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체 자체의 등록 제도가 있음
- 관할 지역의 세금 납부를 위한 사업자등록은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 사용자 식별 번호, 판매허가증 등이 필요

4. 프랑스

- ☐ 주얼리 소매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없으며 프랑스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등 절차가 있음

5. 싱가포르

- ☐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m Financing, PSPM)에 의거하여 귀금속 도소매, 중고품 거래 등 사업체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